

『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을 지역 서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육성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서점 요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

나.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추진 대상 확대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, 「소상공인기본법」,

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서점의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서점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기존 서점의 운영 여건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, 사업 추진 시 규모별 균형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권역별 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작가와의 만남 및 독서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